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9월 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5. 9.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가. 제안이유

- 지진에 의한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안 제3, 4조)
-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안 제6조~8조)
-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안 제9조)
-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지원 등(안 제10, 11조)
-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세부기준 등(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대책법」 및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제정 조례안임.
-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12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을 규정하고
 -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와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또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위험도 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
-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발생 횟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한반도가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진 발생 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9 호
----------	--------

제출연월일 : 2015.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진에 의한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 나.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안 제3, 4조)
-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안 제6조~8조)
- 마.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안 제9조)
- 바.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지원 등(안 제10, 11조)
- 사.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세부기준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5. 7. 30 ~ 8. 19,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된 사람 중 선정한다. 다만, 구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단원을 증원할 수 있다.
-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 ⑤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구 지역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해제)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⑦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또는 위험도 평가단원이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6.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해제) 신청서

(제5조제6항 관련)

회원번호		신청일	
------	--	-----	--

성명		생년월일	
----	--	------	--

소속		직급	
----	--	----	--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 항만
 가스·전력·통신 기타()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5조제6항 관련)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위험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2- -)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제한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2- -)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사용가능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2-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출입통제 표지(제7조제4항 관련)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2- -)

210mm×297mm